

사람과 자연이 **공존**하는 **정신** 제주



- 주민이 찾는 마을복지회관 만들기 -
**2021년 마을복지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화
추진계획**

Jeju 제주특별자치도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
(자치행정과)

- 주민이 찾는 마을복지회관 만들기 -

2021년 마을복지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화 추진계획

- ◇ 마을복지회관이 자생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주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
- ◇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카페, 육아도움터, 3D 프린터 등이 설치된 융합형 복지공간으로 점진적 변화 유도

* 추진근거 : 「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I 추진방향

-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 또는 물품을 마을복지회관에 조성·구비하여 마을복지회관의 활용도 제고
- 마을주민들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
 - 마을복지회관이 연령, 성별, 출신지역 상관없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

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마을복지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화
- 사업기간 : 2021. 6월 ~ 12월
- 대상 : 도내 마을복지회관
-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 및 물품 구입
(사업 예시)
 - 마을 주민 간 담소, 지역 정보 공유, 지식 함양 등을 위한 북카페 조성
 - 주민 자녀들이 한 데 어울려 놀 수 있는 육아터 등 실내 공간 제공
 - 각종 교육(여가·취미) 프로그램 운영 및 영화 상영 등 문화 공간 조성

○ 지원자격

- 리, 통, 마을회 등 마을복지회관 운영 단체

* 「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」 및 「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」에 따라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(마을복지회관) 지원 제외

※ 사업신청 시 반드시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

○ 지원규모 : 총사업비 75,000천원, 1개소 당 37,500천원 이내

* 보조율은 공간조성 70%, 물품구입은 50%, 피해지역 정액

○ 보조금 교부 조건

(공간 조성) 조성 후 5년 이상 사용 및 관리

* 「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지침」(정책기획관), 공공육아나눔터 사업(여성가족부) 기준 준용

(물품 구입) 구입목적에 맞게 5년 이상 사용 및 관리

* 처분은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제한기간 결정

- 그 외 사항은 「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」에 따름

Ⅲ 심사 및 선정

1차 심사 : 자체심사위원회(도+행정시 합동 별도 구성)

○ 심사기준(안) ※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(100)
참여적정성	사업신청 단체의 적정성 -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 및 단체 자부담 능력 등 재정상황, 인력현황 등	10점
사업계획의 적절성	사업목표,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마을주민 의견수렴 정도 - 추진일정의 적정성, 사업취지(주민복지) 적합 여부 등	25점
사업예산의 적정성	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- 신청 사업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등	20점
사업의 효과성	사업성과 및 기여도 - 파급효과, 향후 발전가능성 등	25점
사업 사후관리	사업 지속성, 공간(물품)운영방안 - 5년 이상 유지 가능한 운영비 확보방안 등	20점

□ 2차 심사 : 도 보조금심의위원회

○ 최종 선정 시, 보조금 교부 결정

※ 당초 신청한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음

IV 추진 일정



붙임 : 공고문(안) 및 서식 각 1부.